

- 나. 항공기 사고보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업무 절차를 명확히 규정 (안 제10조)
- 다. 항공예보 및 항공특보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및 명시 (안 제12조~제17조)
- 라. 항공특보 통보기관 및 통보처 관리 업무 명시를 통해 통보업무 강화(안 제18조)
- 마. 기상법에 따른 용어 정비
- 바. 군 공항 항공기상 업무 조정(안 별표 2)
- 사. 항공특보의 발표기준 현행화(안 별표 5)

#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(참조: 기상서비스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 ○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 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○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-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(우)07062
- 전자우편: 2seun@korea.kr
- 팩스: 02-2181-0859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(02-2181-084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●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-371호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「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」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-23호)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21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

### 1. 개정 사유

- 2015년 화평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(既存 117항목)은 고시(2019-23, 2019.6.13) 되어 있으나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시험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전면 개정(1항목) 및 추가적 제정(1항목) 필요
-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·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규제에 적극적 대응 필요

### 2. 주요 내용

- 생태영향 시험분야 2항목 시험방법 제·개정
  - 제3장 생태영향 시험분야
  - 제3항 어류 급성독성시험 (전면 개정)
  - 제16항 어류배아 급성독성시험 (제정)

## 3. 의견제출

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(우편번호: 22689, 주소: 인천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, 참조: 위해성평가연구과, 전화 032-560-7184, 팩스 032-568-2037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수정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본 「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」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(www.nier.go.kr) 내 정보마당/법령정보/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

### ●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-37호

행정처분 사전(청문실시)통지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, 제2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(청문실시)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21일

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## 1. 대상 업소

| 업체명     | 허가번호              | 대표명 | 소재지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|
| 사노코퍼레이션 | 의료기기수입업<br>제3976호 | 김무성 | 1.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상동로 78-63 c동 6호(나전일반산업단지)<br>2.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285-1<br>3.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226번길 4 |

## 2.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

- 의료기기수입업 허가 취소

## 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

-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

## 4. 근거법령

-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 제23호 규정 위반
-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제58조 제1항 [별표8] II. 개별기준 제3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

## 5.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

가. 청문일시 : 2020. 8. 11.(화) 15시

나. 장 소 :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층 605호 중회의실

(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603호)

다. 대 상 : 본인 또는 대리인

라. 청문주제자 :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

마. 의견제출방법 :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